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29
----------	------

2018년 4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4월 3일 상정·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복지본부장)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확대·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안 제1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정책방향 중심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평가, 지표개발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위원회 위원수를 15명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이상 40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고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를 신설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장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장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 완료(규제심사 대상아님)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 완료(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규정)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 완료(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갈등사항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8.2.1. ~ 2.2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붙임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2015.07.01.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주요내용별 검토

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자문기능 확대 및 변경

-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근거¹⁾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심의자문기구였으나, 「사회보장급여법」(2015.7.1.시행)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중복규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이 국회에서 개정(17.10.24)되었음.

1) (중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같은 법의 시행(18.4.25)을 앞두고, 개정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한 ‘사회보장위원회’로 확대·개편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서 교육·고용·주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격상되었음.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은 바, 위원회 명칭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②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추진, ③ 자치구의 사회보장 지역격차 해소·지원, ④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정책 등으로 확대하였음.(안 제2조)

<사회복지위원회 주요개편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기 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추진 등에 관한 사항
위 원 수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15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임기	2년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 가능
조 직	소위원회 설치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원수를 증원(기존 15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 ⇒ 개정 1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하였으며(안 제3조),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

고(안 제4조),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8조 및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조례안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운영하는 반면에 실무위원회는 시장이 설치하도록 한 바,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검토기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의 주체를 위원회가 소속한 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귀속하도록 명시하였다고 함.
 - 그러나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은 실무위원회를 위원회가 설치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위원회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실무위원회 설치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장에게 귀속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는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나, 설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입법 재량에 맡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 검토하건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을 일부 포함하고 (외부) 실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관례인 바, 실무위원회의 행정적 기능과 집행부의 집행 담보력 등을 감안할 때 시장이 실무위원회 설치권한을 가지는 방안도 무방하다고 하겠으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 등을 감안할 때 실무위원회 설치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 이외에도 상위법령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자문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전문가·안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였으며(안 제14조), 사회보장 증진과 복지관련 민·관 협력을 위한 연계협력 증진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였음.(안 제15조)

나. 위원회 구성의 ‘같은 법 규칙’ 준용 문제(안 제3조제2항)

전부개정조례안(안 제3조제2항)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②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선출, 임기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집행부는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선출방식,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등을 ‘같은 법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단지 위원장과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각각 명시함에 그치고 있음.(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가능, 위원은 두 차례 연임 가능)
- 위와 같은 준용조항은 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²⁾을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제 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음.
- 검토하건데 사회보장급여법(제40조)은 위원회 설치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위원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에 위임(단체위임사무 성격)하였는 바, 단체위임사무³⁾는 고유사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의 감독도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에 그친다고 하겠음.

2)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3-0288 참조

3)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라 위임받은 한도 안에서 당해 집행기관은 위임자인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고 그의 후견적 지휘감독을 전면적으로 받으며 지방의회에서 이에 관여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볼 때,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은 자주적으로 처리해야 할 자치사무에 준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 편의적인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질 사안이 아니라고 하겠음.
 - 보건복지부령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법시행령 제4조)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이와 유사한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보육정책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의 “교통위원회” 등의 위원회 조례가 있으나, 각각의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용하지 않고 각각의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서울시장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p>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 조례 반영 시기의 문제

-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지난 2016년 2월에 통보⁴⁾한 바, 집행부는 표준 조례안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권’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소극적) 유권해석(2016. 7.28)에 따라 ‘같은 조례’ 개정 추진이 보류되어 왔음.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시행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지 못한 입법상의 과실에 따른 법적 혼선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전	개정후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

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751, 2016. 2.12.

<p>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p> <p>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 의체</p> <p>— 이하 생략 —</p>	<p>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p> <p>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 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 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p> <p>— 이하 생략 —</p>
---	--

- 검토하건데, 집행부의 조례개정 보류 해명사유를 보면, 「사회보장급여법」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 임원 추천을 위해 (개정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상 어려움을 감안할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법인 임원 추천에 한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음.
- 국회의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같은 법을 행정조직을 통해 즉시 실행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집행부에게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3 결론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에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에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한정되었던 지역사회복지의 범주를 고용·주거·교육·문화 부문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사회보장”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사회복지위원회’를 발전적으로 대체하고자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을 시행규칙에 일괄 준용한 점은 지방분권 측면에서 재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으나, 국회의 입법상 과실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이 병존·시행된 바, 이들 두 법률에서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7조의 2)와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안이 지연되어 온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음.
-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추천권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보장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를 병행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을 지연하고 사회복지위원회를 존치·운영했다고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제도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앙정부의 표준 조례안이 집행부에 통보됨에 따라, 시장의 조례 제출 권한의 행사여부에 의하여 표준 조례안에 대한 공론(公論)이 결정되는 상황인 바, 앞으로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통보 내용을 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등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29
----------	------------

제안년월일 : 2018년 4월 13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단체 위임사무에 해당한다는 점과 조례 자체의 완성도 및 체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 선출 방법 및 위원장과 위원의 연임 규정을 각각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3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다.

안 제3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정안
<p>제3조 ① (생략)</p> <p>② <u>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선출, 임기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 ① (생략)</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④ <u>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u></p>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다만,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4.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서울시 사회보장 민·관협력 증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동안(연임하는 경우의

임기는 제외한다) 부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그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연계협력증진) 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서울시 복지관련 타위원회 및 단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